

---

---

# 2012년 지방세지출보고서

(2011년 결산 및 2012년 추계 기준)

---

---

경상북도 영주시

# 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현황 개요

## 1. 비과세·감면 총괄표

(단위: 천원, %)

구 분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	비교 증감
비과세·감면액(A)	4,127,331	4,146,508	19,177
비과세	2,459,574	2,443,350	△16,224
감면	1,667,757	1,703,158	35,401
지방세 징수액(B)	38,435,937	39,390,000	954,063
비과세·감면율(A/A+B)	9.7	9.5	2.0

## 2. 기능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분 야	'11년(결산)		'12년(추계)		비교증감	
	비중	비중	비중	비중	증감률	증감률
<b>총 계</b>	4,127,331	100	4,146,508	100	19,177	0
1 일반공공행정	1,457,810	35.3	1,403,842	33.9	△53,968	△3
2 공공질서 및 안전	38,810	0.9	31,883	0.8	△6,927	△17
3 교육	419,809	10.2	426,684	10.3	6,875	1
4 문화 및 관광	177,151	4.3	184,810	4.5	7,659	4
5 환경보호	49	0	36	0	△13	△26
6 사회복지	548,728	13.3	564,280	13.6	15,552	2
7 보건	34,299	0.8	36,128	0.9	1,829	5
8 농림해양수산	127,919	3.1	141,220	3.4	13,301	10
9 산업·중소기업	193,886	4.7	170,829	4.1	△23,057	△11
10 수송 및 교통	154,969	3.8	149,181	3.6	△5,788	△3
11 국토 및 지역개발	131,077	3.2	132,597	3.2	1,520	1
12 과학기술	0	0	0	0	0	0
13 국가	824,395	20.0	882,130	21.3	57,735	7
14 외국	50	0	66	0	16	32
15 기타	18,379	0.4	22,822	0.6	4,443	24

### 3. 세목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분 야	'11년(결산)		'12년(추계)		비교증감	증감률
		비중		비중		
<b>총 계</b>	4,127,331	100	4,146,508	100	19,177	0
보통세	4,127,331	100	4,146,508	100	19,177	0
취득세						
등록세						
면허세						
레저세						
주민세	30,331	1	28,290	1	△2,041	△6
지방소득세	132,420	3	170,374	4	37,954	28
재산세	3,293,746	80	3,292,257	79	△1,489	0
자동차세	670,834	16	655,587	16	△15,247	△2
주행세						
담배소비세						
목적세						
공동시설세						
지역개발세						
지방교육세						
도시계획세						
사업소세						

## Ⅱ. 지방세 비과세 ·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### 1. 일반공공행정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일반공공행정</b>		<b>합 계</b>	<b>1,457,810</b>	<b>1,403,842</b>
1	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, 등록면허, 주민세, 재산, 자동차, 지방소득,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88 1호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, 경호, 경비, 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 오물수거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, (지방세법 §126 1·2호)	소 계	1,323,895	1,268,865
		재산세	1,321,157	1,267,032
		자동차세	2,738	1,833
3	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, 공공용재산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소 계	5,831	4,243
		재산세	5,831	4,243
7	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, 등록면허, 주민, 재산, 지방소득,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①, §90②)	소 계	19,482	19,178
		재산세	19,482	19,178
8	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-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3호)-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재산,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1호, §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①)	소 계	108,602	111,556
		재산세	108,602	111,556

### 2. 공공질서 및 안전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공공질서 및 안전</b>		<b>합 계</b>	<b>38,810</b>	<b>31,883</b>
12	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- 천재, 지변, 소실,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, 선박,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, 등록면허, 레저, 주민, 재산, 자동차, 지방소득, 담배소비,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④, §92① 1호, §92②, §92③)	소 계	38,810	31,883
		재산세	8,549	0
		자동차세	30,261	31,883

### 3. 교육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교육</b>		<b>합 계</b>	<b>419,809</b>	<b>426,684</b>
14	<b>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</b> 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88 1호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	<b>소 계</b>	<b>1,423</b>	<b>1,498</b>
		재 산 세	1,423	1,498
18	<b>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①, §41②, §41③, §41⑤)산업체부설 중,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,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,실습용 차량,기계장비,항공기,입목,선박에 대하여 취득,주민세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①, §42②, §42⑤)	<b>소 계</b>	<b>413,859</b>	<b>420,574</b>
		주 민 세	950	915
		재 산 세	412,909	419,659
20	<b>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주민세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3①, §43②, §43③, §44)	<b>소 계</b>	<b>1,818</b>	<b>1,839</b>
		재 산 세	1,818	1,839
22	<b>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</b> -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-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8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②)	<b>소 계</b>	<b>2,709</b>	<b>2,773</b>
		재 산 세	2,709	2,773

### 4. 문화 및 관광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문화 및 관광</b>		<b>합 계</b>	<b>177,151</b>	<b>184,810</b>
23	<b>종교,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①, §50②,	<b>소 계</b>	<b>152,731</b>	<b>159,372</b>
		주 민 세	250	25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	§50③, §50⑤, §50⑥)-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50% 감면, 재산세 면제(조례)	재 산 세	152,481	159,122
	<b>체육진흥을 위한 감면</b>	소 계	17,863	18,386
28	- 정부 인,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,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①)- 한국마사회 부산,경남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(부산,경남 도내 장외발매소 발생분 제외) 세액의 20% 경감(개별감면조례, 부산광역시,경상남도, 060-063)-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% 경감(개별감면조례, 부산광역시, 060-063)-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륜장 본장(광명동 경륜장) 및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액의 50% 경감(개별감면조례, 경기도, 060-063)	재 산 세	17,863	18,386
	<b>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	소 계	6,557	7,052
29	- 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-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② 1?2호)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국보 등과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, 시장 군수가 지정된 부동산,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세 면제(조례)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% 감면(조례)-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종로구, 060-064)	재 산 세	6,557	7,052

## 5. 환경보호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환경보호</b>		<b>합 계</b>	<b>49</b>	<b>36</b>
30	<b>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</b> -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, 기술개발지원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① 1,2호)	<b>소 계</b>	<b>49</b>	<b>36</b>
		재 산 세	49	36

## 6. 사회복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사회복지</b>		<b>합 계</b>	<b>548,728</b>	<b>564,280</b>
34	<b>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</b>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(균등분) 비과세(지방세법 §77②)	<b>소 계</b>	<b>15,500</b>	<b>14,843</b>
		주 민 세	15,500	14,843
35	<b>장애인에 대한 감면</b> -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 1~3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,자동차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- 시각장애(4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,자동차세 면제(조례)	<b>소 계</b>	<b>347,082</b>	<b>358,893</b>
		자동차세	347,082	358,893
38	<b>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, 재산세 면제,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,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4①)-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,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4②)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,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4③)	<b>소 계</b>	<b>2,595</b>	<b>2,365</b>
		재 산 세	2,595	2,365
39	<b>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</b>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, 양로원,보육원,모자원,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①, §22②, §22③, §22⑤)	<b>소 계</b>	<b>18,875</b>	<b>19,287</b>
		주 민 세	1,250	1,200
		재 산 세	17,625	18,087
41	<b>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주민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-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2①, §22의2②)	<b>소 계</b>	<b>9,747</b>	<b>10,034</b>
		재 산 세	9,747	10,034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42	<b>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</b> - 경로당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-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,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,2호)	소 계	8,696	7,500
		재산세	8,696	7,500
48	<b>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, 부동산 취득,등록면허,주민세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,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① 1호)-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,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,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?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(지방세법 §54① 7호)	소 계	103,568	102,434
		자동차세	103,568	102,434
49	<b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</b> 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0①)- 보훈병원에 대한 주민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30②)- 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주민,재산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0③)- 대한민국제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 2호)	소 계	633	641
		재산세	633	641
51	<b>임대주택에 대한 감면</b> - 대한주택공사의 60㎡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- 대한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,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②)-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⑤)-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 임대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2①, §31의2②)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② 1호)	소 계	42,032	48,264
		재산세	42,032	48,264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52	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-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①)	소 계	0	19
		재산세	0	19

## 7. 보건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보건</b>		<b>합 계</b>	<b>34,299</b>	<b>36,128</b>
55	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,재산,지역 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①)- 사립대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,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②)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 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	소 계	34,299	36,128
		재산세	34,299	36,128

## 8. 농림해양수산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농림해양수산</b>		<b>합 계</b>	<b>127,919</b>	<b>141,220</b>
60	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- 농업인,영농조합법인,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 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 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① 1호)- 농지장기 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 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(지방세특 례제한법 §13① 2호)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 득하는 농지,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 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,시설물 취득,재산세 면 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호)- 한국농어촌공 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2호)-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3호)- 농어촌생활환 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 한법 §13② 4호)	소 계	9,092	10,142
		재산세	9,092	10,142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61	<b>농업법인에 대한 감면</b> -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영농,유통,가공용 부동산 취득,재산세 50% 감면,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)-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(조특법 §66③)	소 계	17,232	8,380
		재산세	17,232	8,380
63	<b>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</b> -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,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,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,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2호)	소 계	1,528	1,672
		재산세	1,528	1,672
68	<b>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</b> - 농협,수협,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①)- 농협,수협,산림조합,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,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②)- 농협,수협,산림조합,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,지방소득세 50% 감면, 업무용 부동산 취득,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③,④)- 농협,수협,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,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① 1호)	소 계	87,229	115,170
		주민세	9,091	7,769
		재산세	77,480	66,655
		지방소득세	658	40,746
71	<b>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</b> 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,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㎡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6)	소 계	12,838	5,856
		재산세	12,838	5,856

## 9. 산업·중소기업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산업·중소기업</b>		<b>합 계</b>	<b>193,886</b>	<b>170,829</b>
73	<b>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특법 §119②, §120③, §121)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,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,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 ③ 1,2호)	<b>소 계</b>	<b>3,121</b>	<b>753</b>
		재 산 세	3,121	753
76	<b>산업기술지원을위한과세특례</b> -정부로부터인허가를받거나민법외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-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,주민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③,④)	<b>소 계</b>	<b>100</b>	<b>50</b>
		주 민 세	100	50
79	<b>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</b> - 벤처기업집적시설,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(지방세법 §58 ②,③)-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,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등(조례)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,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(조례)	<b>소 계</b>	<b>0</b>	<b>77</b>
		재 산 세	0	77
80	<b>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</b> -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,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121의2)(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)	<b>소 계</b>	<b>22,423</b>	<b>23,409</b>
		재 산 세	22,423	23,409
84	<b>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</b> -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,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?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1)- (인천,경기,충남,전북,전남,제주)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- (강원,충북,경북)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,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	<b>소 계</b>	<b>4,288</b>	<b>6,038</b>
		재 산 세	4,288	6,038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86	<b>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자동차,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,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,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①)-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-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,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②)	<b>소 계</b>	<b>163,954</b>	<b>140,502</b>
		자동차세	163,954	140,502

## 10. 수송 및 교통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수송 및 교통</b>		<b>합 계</b>	<b>154,969</b>	<b>149,181</b>
90	<b>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</b> -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,주민,재산,지방소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①)-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,주민,재산,지방소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②)	<b>소 계</b>	<b>150,824</b>	<b>149,181</b>
		주민세	2,895	2,979
		재산세	16,167	16,574
		지방소득세	131,762	129,628
97	<b>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</b> -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, 기타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③)- (서울,부산,대구)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5% 감면	<b>소 계</b>	<b>4,145</b>	<b>0</b>
		자동차세	4,145	0

## 11. 국토 및 지역개발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국토 및 지역개발</b>		<b>합 계</b>	<b>131,077</b>	<b>132,597</b>
106	<b>산업단지에 대한 감면</b> -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,증축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-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,조성 후 분양,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,재산세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 ①②③④)- 산업단지 내 개축,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(조례)- 농공단지 내 휴,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조례)- (부산, 해운대)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- (광주 광산구)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- (대전 유성,대덕구)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- (강원,동해시)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,증축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	<b>소 계</b>	<b>80,697</b>	<b>80,916</b>
		재 산 세	80,697	80,916
109	<b>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</b> -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5)-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% 감면(조특법 §121의9③)-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민,지방소득세 면제, 사업용 부동산 취득,등록면허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조특법 §121의16)- (서울)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,등록면허세 면제- (부산) 한국거래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,등록면허세 면제- (부산)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,등록면허세 50% 감면- (제주) 별장에 대	<b>소 계</b>	<b>22,115</b>	<b>21,796</b>
		재 산 세	22,115	21,796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	한 취득세 세율 4% 적용, 재산세는 일반 주택 세율 적용- (제주)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% 적용, 재산세 3년간 25% 감면- (제주) 골프장용 토지,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% 적용, 골프장용 건축물,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저율과세- (제주)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사업시행자가 관			
111	<b>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</b> -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①)-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②)-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③)	<b>소 계</b>	<b>28,205</b>	29,885
		재 산 세	<b>28,205</b>	29,885
115	<b>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</b> 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②)-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 재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③)-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,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0.1% 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④)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,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⑤) -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대해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.15%(조례)- 하수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조례)-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75% 감면(조례)	<b>소 계</b>	<b>60</b>	0
		재 산 세	<b>60</b>	0

## 12. 과학기술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과학기술</b>		<b>합 계</b>	<b>0</b>	<b>0</b>

## 13. 국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국 가</b>		<b>합 계</b>	<b>824,395</b>	<b>882,130</b>
117	<b>국가에 대한 비과세</b> - 국가에 대한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세, 지역자원시설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88① 1호, §109①, §145① 1호)- 국가가 국방,경호,경비,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,청소,오물수거와 도로공사, 우편,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)	<b>소 계</b>	<b>824,393</b>	<b>882,128</b>
		재 산 세	813,586	871,159
		자동차세	10,807	10,969
119	<b>국가가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</b> 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<b>소 계</b>	<b>2</b>	<b>2</b>
		재 산 세	2	2

## 14. 외국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외 국</b>		<b>합 계</b>	<b>50</b>	<b>66</b>
123	<b>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</b> -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,등록면허, 주민,재산,지역자원시설,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2호, §88 2호, §109①, §145②)- 주한외교기관,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 3호)	<b>소 계</b>	<b>50</b>	<b>66</b>
		재 산 세	50	66

## 15. 기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<b>기 타</b>		<b>합 계</b>	<b>18,379</b>	22,822
128	<b>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</b> 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, 재산,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⑤, §109③ 3호, §109③ 5호, §145①)-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③ 5호, 지방세법 시행령 §108③)	<b>소 계</b>	<b>6,486</b>	<b>10,559</b>
		재 산 세	6,486	10,559
134	<b>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① 6호)- 행정구역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, 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, 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② 4호)-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③)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②)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63② 6호)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40② 3호)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40② 4호)-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40② 5호)-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	<b>소 계</b>	<b>8,007</b>	<b>8,798</b>
		자동차세	8,007	8,798
137	<b>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</b> -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, 주민, 재산, 지방소득,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1①, ②, ③ 2)-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, 재산세 면제,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	<b>소 계</b>	<b>619</b>	<b>471</b>
		재 산 세	619	471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	
		세 목	'11년(결산)	'12년(추계)
	득,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③ 1호)			
138	<b>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</b> - 신협,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재산세 면제, 주민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1호, §87② 1호)-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2호, §87② 2호)-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,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 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① 2,3호)	<b>소 계</b>	<b>2,981</b>	<b>2,704</b>
		주민세	295	284
		재산세	2,686	2,420
139	<b>새마을운동조직등에 대한 감면</b> -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, 재산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주민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①)-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, 재산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 1호)-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, 재산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 2호)- (경남)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(추가)	<b>소 계</b>	<b>14</b>	<b>15</b>
		재산세	14	15
142	<b>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</b> -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의2)	<b>소 계</b>	<b>272</b>	<b>275</b>
		자동차세	272	275